

울산지방법원 2024. 12. 13 선고 2023가단13014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

담당변호사 권오형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3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5,753,615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가 2021. 7. 23. 피고에게 양산시 C 토지 지상의 셀프 세차장 설치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를 공사대금 380,000,000원에 도급주었다가(이에 따른 원 · 피고 사이의 계약을 '이 사건 도급계약'이라고 한다),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영함에 따라 총 공사대금이 365,000,000원으로 감액된 사실,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30,000,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2. 원고 청구의 요지

가.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별지 가.항 미시공 공사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,759,865원을 미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298,240,135원(= 365,000,000원 - 66,759,865원)인데, 원고가 이를 초과한 330,000,000원을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1,759,865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별지 나.항 하자보수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,993,750원 상당의 오시공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53,993,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원고와 피고는 2021. 9.말경 피고가 2021. 10. 23.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 20,000,000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는데, 피고는 위 기한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약금 2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

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별지 가.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

66,759,865원 해당 부분을 미시공하였거나,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나.항 기재와 같이 53,993,750원 상당의 오시공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미시공 · 오시공 내역이 정리된 갑 제2, 5호증, 갑 제18호증의 8, 9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고, 갑 제6, 7, 9, 10호증의 기재 내역만으로는 관련 공사 내용 또는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. 피고가 원고 주장의 미시공 항목들은 당초 계약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 항목이라고 주장하고 오시공 하자의 존부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음에도,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 · 오시공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).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나. 위약금 청구에 대한 판단

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, 피고가 2021. 10. 23.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20,000,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미경

별지